

한말의 울릉도 어업과 독도 영유권 문제*

박 병 섭**

<목 차>

	P
1. 머리말	156
2. 한말 울릉도 어업의 시대구분	157
3. 제1-1기 일본 어민의 침어기(1876~1883)	159
4. 제1-2기 통상장정에 의한 어업기(1883~1894)	161
5. 제2-1기 일본인의 불법 정주기(1894~1899)	171
6. 제2-2기 일본 정부의 정주 추진기(1899~1904)	172
7. 제3기 일본 제국의 침략 강화기(1904~1910)	186
8. 울릉도 주민들의 독도 인식 및 이용	196
9. 독도의 호칭에 관한 고찰	204
10. 석도(石島)의 호칭에 관한 고찰	210
11. 우산도 탐색 실패에 관한 고찰	214
12. 결 론	217
부록; 메이지(明治)시대의 화폐 가치	222

【국문 초록】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의해 울릉도의 관할 구역으로 규정된 석도를 한국의 연구자들은 독도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일본 외무성이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왜 칙령에 독도는 우산도가 아니라 석도라는

* 본 논문은 일본 鳥取短期大學 『北東アジア文化研究』31호(2010.2 발간) 및 32호(2010.12 발간 예정)에 투고한 「明治時代の樺島漁業と竹島=獨島問題」(1), (2)의 가필 번역임을 밝혀둔다.

** 일본 竹島=獨島問題研究넷 대표

이름으로 기재됐는지 규명이 필요하다. 또한, 외무성은 가령 칙령에서 말하는 석도가 독도라 할지라도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했는지도 의문시하고 있다. 이런 의문에 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업 관계의 자료이다. 본 논문은 한말의 울릉도 해역의 어업을 통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살펴본다.

연구 범위는 시기적으로 조선의 개국(1876)으로부터 일본에 의한 한국병합(1910)까지로 한다. 이 기간의 어업을 종래의 시기 구분에 따라 청일전쟁까지를 제1기, 그 후부터 러일전쟁까지를 제2기, 그 이후를 제3기로 한다. 제1기와 2기는 울릉도의 어업에 맞춰 세분화한다.

제1-1기, 일본 어민의 침어기(1876~1883)에는 일본인이 울릉도로 침입하여 나무의 도벌이나 밀어를 했다. 일본인의 침입은 일본 해군의 지원 하에 이루어졌다. 그 탓으로 울릉도로 침입하여 느티나무 등을 도벌하거나 전복을 채취하는 자가 야마구치(山口)현을 중심으로 급증하여 그 수는 약 400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조선 정부가 이 침입 사건을 알게 되어 일본에 항의한 결과, 일본 내무성은 1883년에 울릉도의 일본인을 전원 송환하였다.

한편, 조선인의 어업은 한말의 전 기간에 걸쳐 매년 봄에 전라도에서 울릉도로 가서 미역을 채취하고 돌아가는 것이 통례였다. 그러나 미역 이외의 어업은 보잘 것 없었다. 겨우 제3기 후반에 들어가서 오징어잡이가 이루어졌다.

제1-2기, 통상장정에 의한 어업기(1883~1894)에는 오이타(大分)현의 잠수기 어업자가 울릉도로 가서 전복을 땀다. 그들은 울릉도에 축실(築室), 즉 오두막집을 설치하고 머물렀으므로 적발되었다. 다음 해에도 오이타현의 어민이 울릉도로 가서 소란을 피웠다. 그러나 일본 어민은 제1-2기에는 울릉도에서 어업에 필요한 작업장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했기 때문에 그들의 어업은 산발적이었다.

제2-1기, 일본인의 불법 정주기(1894~1899)에는 나무 도벌을 위하여 울릉도로 침입한 일본인의 거주가 일상화됐다. 그 탓으로 일본인 어민도 불법이지만 울릉도에서의 거주가 가능하게 되고, 어업에 필요한 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어획물을 수출할 때 수출세를 지불함으로써 울릉도 도감으로부터 거주를 보증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 그래서 일본인의 어업이 번창했는데, 그 중에서도 잠수기 어업자 등이 전복이나 우뚝가사리를 남획하였다. 그러나 일본인의 거주가 울릉도 도감에 의해 허용됐다고 해도 한국 정부에 의해 허용된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러시아의 퇴거 요구를 받아들여 일본인 주민들에게 일단 퇴거 명령을 내렸다.

제2-2기, 일본 정부의 정주 추진기(1899~1904)에는 울릉도에 깊이 뿌리를 내린 일본인들은 일본정부의 퇴거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가 많았다. 일본정부도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그 탓으로 일본 어민은 울릉도에 안주하여 어업의 작업장을 마음대로 설치하고 어업을 지장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인의 어업은 전복이나 해조 채취, 상어잡이 등이었다.

또한, 이 시기에 독도에서의 어업이 시작됐다. 즉 1899년부터 울릉도를 기지로 하여 전복 채취와 상어잡이가 시작됐다. 이런 어업을 통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확실히 인식됐다. 한편, 울릉도 주민은 전설의 섬, 우산도의 탐색에 실패했다. 그 때문인지 칙령 41호(1900)에는 울도군 관할지역에 우산도 대신에 독섬(석도)이 기재됐다고 생각된다.

제3기, 일본 제국의 침략 강화기(1904~1910)에는 울릉도의 일본인이 급증하였다. 어업은 전복이나 해조 채취 이외에 오징어잡이가 발전되어 1904년부터는 제1수출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인도 일본인에게 배워 1907년경부터 오징어잡이에 종사하게 되었다. 또한, 독도에서의 강치잡이가 일본 오키도(隱岐島) 주민에 의하여 1903년에 시험적으로 행해졌고, 1904년과 1905년에는 울릉도에 거주하는 한국어민과 일본어민이 공동으로 독도로 출어했다. 그래서 군수 심홍택도 독도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 군수는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 시찰단'이 울릉도를 방문한 사건을 정부에 보고했을 때 "본군 소속의 독도가 외양 100여 리 밖에 있다"고 밝히고 독도가 울도군 관하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부산의 일본 영사관도 독도를 일관되게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간주하여 일본 외무성에 보고하였다. 일본 영사관은 울릉도 주민의 어업 활동을 통하여 리양코도(독도)를 파악했기 때문에 이런 인식

은 당연했다. 이는 일본이 1905년에 독도를 일본으로 영토 편입한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 영토 편입'을 관보에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영사관도 몰랐는지 계속하여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 즉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영사관의 보고를 『통상휘찬(通商彙纂)』에 게재한 외무성 당국자도 같은 인식이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보고는 그대로 일본 『관보』에 게재되었다. 『관보』 담당자마저 랑코도(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가 되었던 것이다.

주제어 : 울릉도 어업, 칙령41호, 독섬, 석도, 우산도, 마쓰시마, 다케시마, 일본외무성

1. 머리말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41호를 반포하여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고, 그 관할구역을 울릉도 전도와 죽도, 석도로 하였다. 이 석도를 한국의 연구자들은 독도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직접 증명할 자료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일본 외무성은 그것을 의문시함과 더불어 수많은 지도나 관찬서 등에 기술됐던 우산도의 이름이 왜 칙령에 기재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홍보 책자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에서 제시하고 있다.

칙령41호에 기술된 석도가 독도라면 독도는 만국공법에 일컫는 무주지가 아니므로, 일본이 1905년에 무주지를 구실로 삼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내각회의의 결정은 그 근거를 잃는다. 동시에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이름지어 시마네현 오키도사(隱岐島司)의 관할로 한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대한제국에 대한 침략행위가 된다. 이처럼 칙령41호의 석도가 독도인지의 여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칙령에서 말하는 석도가 독도임이 증명된다 할지라도 아직 문제는 남는다. 일본 외무성은 앞의 홍보책자에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시하였다.

만일 이(섬 명칭에 대한, 필자 주) 의문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이 칙령의 공포를 전후하여 조선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사실이 없어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권은 확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무성의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타당한지 어떤지는 고사하고 일본이 독도를 영토편입하기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어떻게 지배했는지가 두 번째 문제로 제기되었으니 그 해명이 필요하다. 일본 외무성의 첫째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대한제국 칙령 41호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어떻게 인식하여 칙령 41호에 석도를 기술했는지 그 경위를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일본에 의한 독도의 영토편입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구체적인 실태를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런 요구에 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업 관계의 자료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약 90km나 떨어져 있는데다가 어업이나 군사목적 외에는 이용가치가 없었던 섬이었다. 울릉도의 높은 곳에서 독도가 육안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독도까지 실제로 간 적이 있는 조선의 관원은 없었던 듯하다. 민간에서는 17세기 말에 어민 안용복 등이 두 번 독도를 거쳐 일본에 갔지만, 실제로 독도로 간 자는 아마 어민 밖에 없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특히 울릉도를 기지로 한 어민이 울릉도나 독도에서 어떻게 어업을 하고, 독도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실정을 해명한다.

2. 한말 울릉도 어업의 시대구분

시기적인 연구 범위를 조선의 개국으로부터 일본에 의한 한국병합 까지로 한다. 이 시기의 어업은 박구병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¹⁾

제1기 개국 이후부터 청일전쟁까지(1876~1894)

1) 朴九秉, 『韓國水産業史』, 태화출판사, 1966, p.268.

제2기 청일전쟁부터 러일전쟁까지(1894~1904)

제3기 러일전쟁부터 한일합방까지(1904~1910)

제1기의 일반적인 특징은 일본 어민의 조선 연안으로의 침어가 시작되고 그것이 1883년에 조약 '재조선국 일본인 통상장정(在朝鮮國日本人通商章程)'('통상장정'이라 약칭한다)에 의해 합법화되어²⁾ 1889년에는 '일본 조선 양국통어장정(日本朝鮮兩國通漁章程)'('통어장정'이라 약칭한다)에 의해 어업의 세목이 구체화되고 일본어민의 통어가 본격화된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 제1기를 통상장정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제1-1기를 일본 어민의 침어기(1879~1883), 제1-2기를 통상장정에 의한 어업기(1883~1894)로 한다.

제2기의 특징은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함에 따라 일본인들의 해외 침략이 한층 더 활발하게 되어, 일본 어민이 포화 상태였던 일본 근해 어장에서 해외, 특히 조선해역으로 쇄도한 시기다. 그런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일본정부는 '원양어업 장려법(遠洋漁業獎勵法, 1897)'을 제정하고 '조선해 통어조합 연합회(朝鮮海通漁組合連合會)' 결성(1900)을 지도하여 일본 어민의 조선해에서의 통어를 적극적으로 보호, 장려하였다. 한편, 울릉도에서는 재빠르게 일본인들의 불법거주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를 울릉도 상황에 맞추어 일본 내무성에 의한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에 대한 귀국 명령(1899)을 기준으로 하여, 제2-1기를 일본인들의 불법 정주기(1894~1899), 제2-2기를 일본 정부의 정주 추진기(1899~1904)로 한다.

제3기는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 제국이 한국을 일본의 세력권에 두고 한국에 대해 노골적으로 지배를 강화한 시기(1904~1910)이다.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1기 일본 어민의 침어기(1876~1883)
2. 제1-2기 통상장정에 의한 어업기(1883~1894)
3. 제2-1기 일본인의 불법 정주기(1894~1899)
4. 제2-2기 일본 정부의 정주 추진기(1899~1904)

2) 일본에서는 「朝鮮國ニ於テ日本人民貿易ノ規則」으로 시행되었다. (外務省, 『日本外交文書』제 16권, p.283)

5. 제3기 일본 제국의 침략 강화기(1904~1910)

본고에서 연월일의 표기는 한국의 경우에는 태양력(太陽曆)을 공식 채용한 1896(건양 원년)년을 기준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1873(메이지 6)년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 이전은 대체로 음력으로, 이후는 양력으로 한다.

3. 제1-1기 일본 어민의 침어기(1876~1883)

1876년, 조선은 일본의 강압 외교에 굴복하여, 강화도 조약(대조선 대일본 수호조규)을 맺고 개국하였다. 개국은 한정적이며, 조약에 의해 개방된 항구는 부산(1876년 개항), 원산(1880년 개항), 인천(1883년 개항)이었다. 그 외의 항구에 일본인들이 들어가는 것은 조난의 경우를 제외하고 불법이었다.

그러나 공도정책이 실시되고 있었던 울릉도는 개항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약을 어긴 일본인들이 일찍이 침입하여 도벌과 밀어를 하였다. 그 배경을 간단히 본다. 일본 에도 시대에 울릉도는 다케시마라고 불리고, 호키국 요나고(伯耆國米子)의 상인에 의한 막부 공인의 '다케시마 도해 사업'이 행해졌다. 그래서 다케시마는 일본인들에게 잘 알려져서 많은 일본 지도에 기재되었다. 그러나 '다케시마 도해 사업'이 숙종기에 한일간에서 문제가 되어, 양국 간의 외교교섭 '울릉도쟁계' 끝에 일본은 울릉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하고 다케시마로의 도해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그런 역사도 메이지 시대에는 거의 잊혀져, 무인도와 다름없었던 울릉도는 조선 땅이라는 인식이 희박해지고 울릉도로의 침입이 시작된 것이다.

울릉도로의 침입은 러시아 공사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를 중심으로 관민일체가 되어 행해졌다³⁾. 야마구치 현청의 기록 「야마모토

3) 박병섭, 「일본인의 제3차 울릉도 침입」 『한일관계사연구』 제352집, 2010, pp.199-223; 朴炳涉, 「山陰地方民の鬱陵島侵入の始まり」 『北東アジア文化研究』 제30호, 2009, pp.33-49.

오사미(山本修身) 복명서」에 따르면, 1878(메이지 11)년에 러시아 공사 에노모토의 처제인 치카마쓰 마쓰지로(近松松二郎) 등은 에노모토의 영향을 받아 울릉도로 도항하여 사업을 준비했다. 이듬해 치카마쓰는 벌목에 필요한 인부를 주로 야마구치현에서 모집하여 울릉도로 보내고 본격적인 도벌과 밀어를 하였다.⁴⁾ 밀어는 주로 전복의 채취였다. 구체적으로 1879~80년 경 야마구치현의 무카쓰쿠(向津具)반도 오오우라(大浦)의 해녀들이 울릉도 방면으로 출어했다는 증언이 있으므로,⁵⁾ 치카마쓰가 그녀들을 데리고 울릉도로 갔다고 생각된다.

야마모토 「복명서」에 의하면 치카마쓰 외에 울릉도에서 밀어를 한 자는 야마구치현의 아사히 구미(旭組)였다. 오오쓰(大津)군의 후지쓰 마사노리(藤津政憲)는 아사히구미의 지배인으로서 1881년 5월부터 울릉도에 인부를 보내어 벌목사업을 시작하고, 다음 해인 1882년에는 '직공어인(職工漁人)'을 보내고 벌목 외에 어로를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야마구치현 미시마(見島)군 미시마우라(見島浦)의 나카야마 이와노스케(中山岩之助)를 주주어업방(株主漁業方) 대표자로 하고, 미시마우라의 잠수부 15명을 보내고 전복을 채취하였다. 야마모토 「복명서」에는 이들 15명의 이름까지 기록됐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침입을 조선 정부가 알아차린 것은 1881(고종18)년이였다. 정부는 일본정부에게 일본인들의 침입을 항의함과 동시에 이듬해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을 파견하여 울릉도에 사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실태나 섬의 개발 가능성 등을 상세히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선정부는 울릉도에 대한 공도정책을 전환하여 울릉도 개척을 시작하였다. 한편, 정부의 항의를 받은 일본 정부는 1883년 3월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하는 태정관 유달(太政官諭達)을 발포하고, 반년 후에는 울릉도에 남아 있었던 일본인 전원을 내무성 서기관 히가키 나오에(檜垣直枝)가 데리고 돌아왔다. 이로써 제1-1기의 일본인들의 밀어는 종료되었다.

4) 山本修身, 「復命書」 『明治十七年蔚陵島一件録』, 山口縣文書館所藏 (行政文書 戰前A 土木 25); 木京陸人, 「明治十六年『蔚陵島一件』」 『山口縣地方史研究』88호, 2002, p.75.

5) 吉田敬一, 『朝鮮水産開發史』, 朝水會, 1954, p.210.

울릉도에서의 조선인의 어업에 관해서는 이규원 『울릉도 검찰일기』와 『계초본』에 간단한 기술이 있다. 이에 따르면, 울릉도에 사는 조선인은 대부분 전라도 출신자이며 전체 약 140명중 115명으로 약 80%에 달했다. 그들은 정부의 해금 정책을 어기고 봄에 울릉도로 들어가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고 미역을 따서 가을쯤 돌아가는 통어자(通漁者)들이었다.⁶⁾ 이와 비슷한 기록이 야마모토의 『복명서』에도 있으며 “조선으로부터는 매년 300명 정도가 도항하여 다시마 등을 채취하고 가을에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적었다. 이 중에서 다시마는 미역의 잘못된 것이다. 그들 울릉도로 불법으로 들어간 조선인 어부들은 해금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정부가 공도 정책을 전환하여 울릉도를 개척하는 방침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4. 제1-2기 통상장정에 의한 어업기(1883~1894)

울릉도의 일본인들이 전원 송환된 1883년 10월, 조선은 일본과의 불평등 조약 ‘재조선국 일본인 통상장정’을 비준하였다. 통상장정 제41조로 인하여 일본 어선은 전라도나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등 4개 도의 근해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제41조는 “사사롭게 화물을 무역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위반한 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단 그곳에서 잡은 어패류를 판매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고 정하여, 어획물 외의 교역을 금지하였다. 제41조에 의해 일본 어선이 강원도에 속하는 울릉도에서 어획 활동을 하고, 그 수확물의 어패류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어패류 외의 물품을 판매한다든지 해조를 채취하는 일은 통상장정 위반이었다.

이 제41조를 근거로 야마구치현이나 오이타현 등의 어선은 주로 전라도 남부해안의 다도해나 부산 서쪽의 경상도 남부해안에 출어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⁷⁾ 그들이 전라도와 경상도 남부해안에 집중한 이

6) 이규원, 『蔚陵島檢察日記』; 이규원, 『啓草本』. 논문에 따라서 『啓草本』은 『啓本草』라고 쓰고 있지만 『啓本草』는 잘못이다.

유는 “많은 섬이 있어서 파도를 피할 수 있으며 뿔감과 물 확보도 용이하고, 또한 부산이나 쓰시마에 비교적 가까워 어획물의 판매에도 유리했기⁸⁾” 때문이다. 어종은 주로 도미와 상어 등이었다.

이즈음 울릉도에도 오키 도젠(鳥前) 우라고(浦郷) 어민이 출어한 것 같은데,⁹⁾ 이는 일시적이고 모험적인 출어였던 듯하다. 그 당시 오키의 어선은 길이 9m이상의 대형선은 드물고, 배에는 동력이 없으며 추진력은 변변치 않은 돛과 몇 정의 노뿐이었다. 게다가 돛은 벗짚이나 갈대를 엮어서 만든 ‘돛자리 돛’으로 날씨가 거칠면 망가지기 쉽고, 배에는 갑판이 없었기 때문에 파도가 쉽게 들어쳤다.¹⁰⁾ 이런 어선으로 먼 바다까지 안전하게 나가려면 개량이 필요한데, 오키에 처음으로 개량선 ‘어선 개량환(改良丸)’이 도입된 것은 1893년이였다.¹¹⁾ 따라서 그 이전의 울릉도로의 출항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다. 이런 시기의 일본인 어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4-1. 전복 채취

1883년 가을에 구마모토현 아마쿠사군(熊本縣天草郡)의 나카우라 이헤이지(中浦伊平次)가 울릉도에서 잠수 기구를 사용하여 어패류와 해조류를 채취했다는 증언이 있다. 그러나 이는 손자의 증언으로 명확하지 않다.¹²⁾ 다음으로 1888년 7월 오키를 출발하여 전복 채취를 위해 울릉도로 간 어선이 있었다. 이는 후술하는 것처럼 오이타현의 잠수기 어업선이다. 오이타현과 야마구치현 등은 일찍이 원양어업에 착수한 어업의 선진 지방이었다.

이 당시 전복 등을 채취하는 잠수기 어업자들은 일본 각지에서 잠수기 규제에 쫓겨, 새로운 어장을 찾아 일본 전국을 헤매고 있었다. 그러다가 곤경에 빠진 잠수기 어업자들은 규제가 없는 조선 바다를 향했다.

7) 「日本漁船の巨利」 『韓日漁業關係』, 국사편찬위원회, 2002, p.12; 外務省記録 358-20 『朝鮮國慶尙全羅兩道ニ於ケル我往漁者ノ情狀報告一件』.

8) 木京陸人, 「山口縣の朝鮮沿海漁業調査」 『山口縣地方史研究』 86호, 2001, p.25.

9) 兒島俊平, 「隱岐漁民の竹島(鬱陵島)行き」 『郷土石見』 21호, 1988, p.41.

10) 위의 논문, p.44.

11) 山陰新聞, 「漁船改良丸の好果」, 明治27(1894)년 1월 14일.

12)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復刻版)古今書院, 1996, p.200.

머지않아 조선 남해안에서도 잠수기 어업은 포화 상태가 됐다. 1887년 말경에는 남획으로 포획되는 전복이 작아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잠수기 어업자들은 새로운 어장을 찾아 일본에서 먼 강원도나 함경도 연해로 북상하기 시작하였다.¹³⁾ 그런 흐름에서 1888년에 잠수기 어업자가 드디어 울릉도에서 전복 채취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울릉도에서의 전복 채취는 일대 사건이 되었다. 울릉도 도장(島長)은 일본인들이 어업을 시작했으니 일단 중지시키고 확인하기 위해 그들을 강원도 관아로 데리고 갔다. 강원도 당국자는 일본인이 가진 "공문이란 오래된 것이니, 이것을 빙자해 어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하였다.¹⁴⁾ 어업 허가증 등 세칙은 다음 해에 '조선 일본 양국 통어장정'(1889.11)에 의해 정해졌으므로 이 사건 당시는 정식 허가증은 없었다. 그러므로 오이타현 잠수기선은 어획물인 전복을 몰수당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 사건이 처음으로 일본에 알려진 것은 1888(고종25)년 8월 7일에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조병식(趙秉式)이 곤도 신스케(近藤眞鋤) 대리공사에게 보낸 서한에서였다. 이 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울릉도 도장 서경수(徐敬秀)의 보고에 따르면 일본인들 30명이 8월 5일에 섬으로 들어와 축실(築室)을 하고 깃발을 올렸는데, 울릉도는 개항장이 아니므로 외국인이 땅을 빌리거나 거류하는 것은 허가할 수 없으니 일본 정부는 축실을 한 일본인들을 철수시키라는 것이었다.¹⁵⁾ 이 서한은 일본인들이 섬에 들어온 목적 등은 밝히지 않고 단순히 축실, 즉 오두막집을 지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서한에 대해 곤도 공사는 조약 위반자에게는 조선 정부 임의로 철거할 것을 명령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일본 영사에 넘겨주도록 하라는 회답 조회를 보냈다.¹⁶⁾ 이 당시 조선에서는 불평등 조약에 따른 일본인의 치외법권을 인정하여 조

13) 木京陸人, 주 (8)의 논문, p.25.

14) 『江原道關草』, 戊子(1888)년 7월 10일; 유미림·조은희, 『개화기 울릉도·독도 관련사료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p.39.

15) 『舊韓國外交文書』 제1권(『日案』1), 高麗大學校, 1969, 문서번호 1229, p.566.

16) 위의 책, 문서번호 1248, p.576.

선은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었으며 위반자들은 일본 영사에게 넘기기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경찰 등의 치안 기능이 없었던 울릉도에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축실을 한 일본인들은 영사에 넘겨지지 않았고, 귀국하여 전복을 압수당한 일을 당국에 호소하였다. 이를 받들어 11월에 일본의 대리공사 곤도 신스케는 전복 몰수 사건에 항의하는 서한을 조병식에게 보냈다.¹⁷⁾ 그 한문 서한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잠수회사 사장 후루야 리쇼(古屋利涉)의 보고에 따르면 이 회사 사원 히메노 하치로지(姫野八郎次)와 미야케 가즈야(三宅數矢)는 어선 4척에 잠수기 2대를 싣고 울릉도 연안 일대 지방에서 어업을 하기 위해 올해 7월 5일에 오기를 출발하여 6일에 울릉도로 도착하고 9일에 어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11일에 도장이 말하기를 관아의 통달이 없으면 어업을 허가할 수 없다, 만약 여기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싶으면 자기와 함께 강원도로 가서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여 어업을 허가하지 않은 채, 그들의 부하가 가지고 있었던 잠수기와 잠수복 두 벌을 압수하였다. 히메노 하치로지는 할 수 없이 다른 어민을 섬에 남겨두고 자신의 배를 타고 강원도 원리포로 갔다. 도장도 조선의 배를 타고 강원도로 갔다. 거기서 도장을 통하여 한성(수도)에 수속을 하였다. 그 후 도장은 정부의 명령이라 하여 울릉도에서의 고기잡이를 엄금한다고 말하고 고기잡이를 허가하지 않은 채 압수한 잠수복 등을 되돌려주며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강하게 명령하였다.

히메노는 진퇴양난에 빠져 섬에 남겨둔 어민들을 생각하여 다시 울릉도로 갔다. 그곳에 조선의 증기선이 정박하고 있었고 내무부의 윤 아무개 주사(主事)가 타고 있었다. 어민 중에 그를 아는 자가 있었다. 윤 주사의 주선으로 섬에 남아 있던 어민들은 당분간은 고기잡이가 허용되었다. 이윽고 도장이 돌아왔다. 윤 주사는 히메노에게 도장의 명령을 받아들이도록 말하였다. 그리고 포획한 전복 1,250근(750kg)과 어민 소유물 일체를 압수하였다. 9월 5일에 섬을 떠났다……

생각건대 울릉도는 강원도 관할의 섬이며 통상장정 제41조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히 왕래 어업 구역 안에 존재하므로 우리 어민이 임의로 섬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지금 도장은 어떤 근거로 우리 어선의 고기잡이를 금지하고, 또한 무엇에 의해 어획한 전복을 압수했는지 본관은 이해할 수가 없다. 혹시 우리 어민이 울릉도에 축실을 하여 깃발을 올린 것을 어채(漁採) 규칙 위반으로 삼아 귀 정부가 철거 명령을 내렸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나, 그 한가지만으로 규약으로 얻은 연안에서의 고기잡이의 권리마저 빼앗는 것은 불합리하다. 게다가 우리 영사관

17) 위의 책, 문서번호 1315, p.601.

의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 어민의 어획물을 압수한다면 이 또한 월권이
다. 그 자를 파직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 조회를 귀 부처의 독판이 조사하여 바로 도장에게 알리고, 압수한 전
복과 잠수기 회사 사장 후루야 리쇼의 물건 등을 신속히 돌려주기를 바
란다.

이 서한에 따르면 도장과 내부 윤 주사의 대응이 다른데, 이는 다음
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 당시 한일 양국은 통어장정의 체
결 교섭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정부는 제주도와 울릉도에서의 어업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이 방침은 일본의 반대에 부딪혀 제주도만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었으나 울릉도는 유예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런 경위로 볼 때 도장 서경수가 “정부의 명령이라 하여 울릉도에서
의 어업을 엄금”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 사정을 알지 못한 탓일까
내부(내무부)의 윤 주사는 강원도에서의 어업을 허가한 통상장정을 근
거로 일본인들의 어업을 일단은 허가했으나, 도장의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윤 주사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주사는 『통서일
기 2』 고종25년 10월 13일조에 보이는 윤시병이다. 이 기록의 13일조에
윤 주사가 음력 6월 22일(양력 7월 30일)에 궁역벌목(宮役伐木)으로 울
릉도에 간 기사나 일본인들이 전복 20여 첩을 범채(犯採)한 기사 등이
적혀 있다. 또한, 같은 조에는 범채한 일본인들 중에 처자식을 데리고
온 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귀국하지 않은 채 도민이 되기를 원했다고 기
록되었다. 도장도 일본인의 청원을 들으니 “무엇을 아까워할 것이 있겠
는가. 답변을 기다린다.”¹⁸⁾고 하였다. 이 일본인은 시라미즈 기치베(白
水吉兵衛)이며 정부로부터는 시라미즈의 진의를 엄히 캐내라는 지령이
내렸다.¹⁹⁾

곤도 공사의 서한에 대해 조병직(趙秉稷)은 전복과 후루야 리쇼의
물건을 반환하는 것을 서한에서 약속하였다.²⁰⁾ 이 서한에서 히메노 하

18) 『舊韓國外交關係付屬文書』 제4권(『統籌日記』2, 고종25년 10월 13일), 高麗大
學校, 1973, p.8.

19) 『江原道關草』 戊子(1888) 11월28일, 己丑(1889) 8월6일; 유미림·조은희,
앞의 책, pp. 40, 45.

20) 『日案』1, 문서번호 1341, p.617.

치로지는 히메노 하치로(八郎)라고 되어 있으나, 이 인물은 『대일본수산회 보고』에 기록된 히메노 하치고로(八五郎)와 동일 인물로 보인다. 이 회보 제 103호에 “(오이타현) 다이자이(大在) 지방에서 와서 사가노 세키(佐賀關)에 머물고 있던 히메노 하치고로라는 자가 있다. 작년(1889)에 그는 조선 마쓰시마에 가서 약 오천엔 남짓의 순익을 얻었다.”고 기록됐으므로 시기와 상황이 일치한다. 히메노는 오키를 경유하여 마쓰시마(울릉도)로 가서 거기서 전복을 채취하고 압수당했으나, 이듬해 1889년에 돌려받은 전복을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 현재의 쌀값 환산으로 약 4,000만 엔을 얻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이타현의 배가 울릉도로 가는데 왜 멀리 돌아 오키에 들렀는지 의문이 든다. 히메노 일행이 오키를 출발한 것은 7월 5일인데 그때까지는 아마 오키에서 전복 채취를 시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의 오키는 잠수기 어업자들의 남획으로 인하여 전복 채취는 절망적이었다. 1880~81년 즈음에는 오키에서의 전복 수확은 1년에 10,000엔, 현재의 쌀값 환산으로 5,400만 엔 정도였으나 1884년에는 1/4로 줄어 1886년에는 “거의 채취되는 곳이 없는 상황에 이를” 정도로 괴멸되었다.²¹⁾ 게다가 이듬해 1887년 잠수기 어업자들은 전복이 대량으로 잡히던 치바(千葉)현에서 규제로 내몰리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히메노는 이듬해 1888년에 오키도로 갔던 것이다. 그러나 오키도의 전복은 생육이 회복되지 못한 채 흉어였거나, 아니면 규제를 받았는지, 그들은 새로운 전복 어장을 찾아 오키도에서 울릉도로 간 것 같다. 그 결과 그들은 울릉도에서 전복을 대량 채취했으나 이를 압수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전복을 돌려받아 거대한 이익을 챙긴 것이다.

이렇게 전복 압수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때 조선 정부는 전복을 반환하였으므로 울릉도에서의 일본인들의 어업을 인정한 셈이 된다. 다만 축실이나 작업장을 짓는 일이 통상장정 위반이라는 인식은 조일 양국 정부가 일치하고 있었다. 이것은 어업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냉장 기술이 없었던 당시, 전복을 건조시키는 작업장을 설치하지

21) 青柳忠一, 「隱岐國水産の景況を述へ併て改良の意見を陳す」 『大日本水産會報』 제65호, 1887, p.22.

못하는 것은 어업자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었다. 전복은 현장에서 반드시 건조나 가공을 하고, 수출하기 위하여 청나라 상인이 살던 나가사키나 고베(神戸) 혹은 1889년에 설립된 조선 부산수산회사²²⁾ 등으로 가져 갈 필요가 있었다.²³⁾ 그러므로 잠수기 어업자들은 조선 각지에 어장 부근의 유력자를 매수하여 위법으로 건조장 등을 세우고 있었으나, 주민들과의 접촉이 희박한 울릉도에서는 그러한 뒷거래가 어려웠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 이듬해 1889년 도쿄부에 제출된 ‘건조장 용지’ 차용 청원이다. 도쿄부 교바시쿠(京橋區)의 세토구치 간지(瀬戸口寛治)는 조선국 속도(屬島) “마쓰시마 근해에서 해초 및 어패류의 산출을 발견”하였으므로 건조장 설립을 위해 해안가의 땅 1정보(町步, 10,000m²)를 차용하고 싶다고 도쿄부에 신청하였다. 도쿄의 잠수기 어업자가 훨씬 멀리 떨어진 마쓰시마(울릉도)까지 나간 것은 치바현의 잠수기 어업 규제에 영향을 받았던 것일까. 세토구치의 신청을 수리한 도쿄부 지사 다카사키 이소로쿠(高崎五六)는 이를 ‘조선국 속도 마쓰시마 출가지의상신(出稼之儀上申)’으로써 1889년(메이지22)년 7월 15일자로 외무대신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외무성은 “마쓰시마는 강원도 관할에 속하므로 본인들이 이 섬의 해안에서 어업을 하는 것은 지장이 없으나 청원과 같은 일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다.”고 차용 청원을 기각하였다.²⁴⁾ 울릉도는 개항장이 아니므로 그곳에 건조장이나 주거를 설치하는 것은 통상장정에 위반하므로 기각은 당연한 일이었다.

4.2. 어선 소란 사건

울릉도의 건조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이듬해도 울릉도에 전복을 채취하러 어선단이 왔다. 당연히 문제가 일어난다. 이번에 이는 어선 소란 사건으로 발전되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울릉도 도장 서경수의 보고에 따르면 1889년 음력 3월 8일(양력 4월 7일)에 이와

22) 『大日本水産會報告』 제106호, 1891 ; 이종학, 『韓日漁業關係調査資料』, 사에 연구소, 2000, p.17.

23) 羽原又吉, 『日本近代漁業經濟史』下권, 岩波書店, 1957, p.101.

24) 外務省記録 3587-1, 「東京府民 瀬戸寛治外一名 朝鮮松島於テ 漁業ノ爲 借地 出願ノ件」 『漁業雜件1』.

사키 다다스케(巖崎忠助)와 히사이 도모노스케(久井友之助) 등 71명은 9척의 배에 타고 울릉도로 가서 전복을 채취하려고 축실을 하며 주민들에게 '화기', 즉 그림이 그려진 도자기를 팔아 대두를 사는 등 교역을 하였다. 축실이나 화물의 매매 등의 행위는 통상장정 제33조 위반이므로 도장은 화물을 몰수하고 50만 문²⁵⁾의 벌금을 내렸다. 그러나 이와사키들은 약정 등은 알지 못한다고 야단치며 돌아가지 않고 소란을 일으켰다고 한다. 조선 감리 부산항 통상사무 이용직은 일본 영사 무로타 요시후미(室田義文)에게 서한을 보내, 이러한 폐해를 엄중히 막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²⁶⁾ 도장이 내린 조치는 제33조에 근거한 최고액의 벌금이었다. 제33조는 "일본 상선이 조선의 개항하지 않은 장소에서 밀거래를 하거나 혹은 밀거래를 도모하는 자가 있다면 해당 상품은 물론 배안의 상품을 조선 정부가 몰수하고 선장에게 50만 문의 벌금을 내린다."고 정하였다. 울릉도는 개항장이 아니므로 일본인들이 축실을 하거나 교역을 하는 것은 통상장정 위반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무로타 영사는 울릉도에서의 전복 채취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조약 위반이 있다면 규칙에 따라 위반자를 부근의 영사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다.²⁷⁾ 규칙이란 통상장정 부속서 "약정한 조선국 해안에서 죄를 범한 일본어민 취급 규칙"을 말하며 그 2조는 범죄자를 영사에게 인도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그 후에도 여파가 있었다. 조선 관헌의 조치에 반발한 히사이 등은 압수당한 도자기를 되찾으려 하였다. 울릉도 도장 서경수의 별도 보고에 의하면 히사이 토모노스케, 미야케 가즈야 등 186명은 24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도방포(지금의 도동)에 침입하여 상기와 같이 축실이나 교역을 했기 때문에 화물을 몰수당했으나, 그 후 그들은 관청의 창고와 민가를 부수고 도자기를 되찾는 등의 행패를 부렸을 뿐만 아

25) 50만 문은 500관문이며 850엔에 상당한다(外務省記録3532, 『靑陵島に於ける伐木關係雜件』, 300관문을 510엔으로 함). 부록의 표에 따르면 메이지 22(1889)년의 1엔은 쌀값 환산으로 현재의 7,976엔에 상당하므로 50만문은 현재의 680만 엔에 상당한다.

26) 外務省記録 3587-1, 「巖島忠助外七拾二名 朝鮮國靑陵島於テ漁業中 條約ニ違犯ノ行爲アリタル旨 同國通商事務ヨリ照會ノ件」 『漁業雜件1』.

27) 상동.

나라 벌금을 대신하려 했는지 도민이 재배하던 조(粟) 약 16석도 절도해 갔다. 이 별보에서 어민 수와 배의 수가 늘었으나 이것은 도장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입수하여 어민 수 등을 정정한 듯하다. 또한, 이 별도 보고에 보이는 미야케 가즈야의 이름은 전년의 전복 몰수 사건의 당사자 이름과 같으므로 이번에도 오이타현 사가노세키의 어선이 사건을 일으킨 것 같다. 미야케는 전년에 거대한 이익을 얻어서 맛을 보았으므로, 보다 많은 이익을 얻고자 도민이 필요한 잡화류를 싣고 울릉도로 간 듯하다.

어선 소란 사건의 보고에 접한 조선 정부는 9월에 이번에는 독판교섭통상사무 민종묵 명의로 일본 공사관에 서한을 보내, 일본 어민의 불법행위에 항의하고 범인의 처벌과 배상을 요구하였다.²⁸⁾ 이에 대해 일본 공사대리 곤도 신스케는 조선에 보낸 회답서에서 통상장정 부속서의 조문을 내세워 해당 지방관이 범죄자를 체포하여 부근의 일본 영사관에 인도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단지 부산과 원산의 영사에게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을 적었을 뿐이었다.²⁹⁾

기타 일본인들의 전복 채취로서는 미에현의 하마구치 세이베(浜口清兵衛)가 1890년부터 1892년까지 울릉도에서 잠수기를 사용하여 전복을 채취하고, 1893년에는 “잠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시마(志摩)에서 해녀 30여명, 그 외에 50여명을 데리고 왔다.”는 증언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마구치의 손자의 증언으로 명확하지 않다.³⁰⁾ 더구나 이 시기는 일본인들의 축실에 매우 민감한 시기였으므로 하마구치 등이 몇 년 동안 적발당하지 않고 울릉도에서 축실을 하고 전복을 채취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하마구치 등이 축실을 하지 않고 전복을 땀다고는 더욱 생각할 수 없다. 손자의 증언은 출어한 연도를 헛갈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훗날의 일본 영사관 보고(1905)는 “미에현민 하마구치 아무개는 올해 5월 어선 2척에 잠수부 32인, 선원 10인을 이끌고 (전복의, 필자 주) 채취를 하고 1일 평균 530근 안팎을 채취하였다.³¹⁾”고 적었다. 이는 하

28) 『日案』2, 문서번호 1510, p.9.

29) 위의 책, 문서번호 1523, p.15.

30) 川上健三, 앞의 책 p.201.

31) 外務省通商局, 「鬱陵島現況」 『通商彙纂』 제50호, 1905. 9. 3, pp.49-51; 官

마구치의 손자의 증언과 비슷하다. 영사관 보고는 다른 사람일지도 몰라도 하마구치 등은 1905년에 출어한 것이다.

4.3. 조선인의 어업

조선인의 울릉도에서의 어업에 관하여 일본 해군 수로부의 『환영수로지(寶瀛水路誌)』 제2권 제2판(1886)은 이렇게 적었다.

울릉도 일명 마쓰시마(松島)

봄에서 여름사이에 조선인은 이 섬에 건너와 조선식 배를 만들어 이를 본국으로 보내며, 또한 다량의 개충(介虫)을 채집하여 햇볕에 말린다. 조선인이 배를 만드는데 쇠못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 나무로 결합한다. 더구나 말린 목재를 사용할 줄 몰라 꼭 생나무를 쓰는 것 같다.

문장 중의 ‘개충’은 전복 등을 가리키는 듯하다. 그러나 조선인 어업의 중심은 미역이며 주로 전라도 삼도(거문도) 등의 어민이 채취하고 있었다. 훗날 울릉도는 1906년부터는 경상남도로, 1913년부터는 일제하에서 경상북도로 편입됐는데, 경상북도는 그들의 미역 채취를 “메이지 16(1883)년경부터 수년간에 걸쳐 전남 거문도의 조선인이 섬에 와서 미역을 채취하고 삼림을 벌채하여 배를 만들고 돌아갔다고 한다.”고 적었다.³²⁾

이러한 미역 채취는 초기에는 좋은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 같다. 1890년 9월 『대일본수산회 보고』 제102호는 “조선의 3품 안후선(安厚善)씨는 울릉도에서의 해산물 채취 및 제조업이 부진함을 한탄하고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상당한 보호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적었다.³³⁾ 조선 정부는 부진한 울릉도의 해산물 채취를 보호하는 한편 울릉도의 미역을 상납시키고 있었다.³⁴⁾

수년 후 정부의 보호가 성과를 냈는지, 일본의 산인(山陰)신문은 미

報 「韓國鬱陵島現況」, 明治 38(1905)年 9月 18日.

32) 「慶尙北道鬱島水産狀況」 『朝鮮彙報』 1915.3.1, p.85.

33) 「朝鮮の漁業」 『大日本水産會報告』 제102호, 1890, p.59; 이종학 앞의 책, p.15.

34) 「江原道關草」, 高宗29(1892)년 8월 23일; 유미림·조은희, 앞의 책, p.53.

역이 조선 국내로 많이 수출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 기사는 시마네현 혹은 어느 군의 수산 기사로 여겨지는 사토 교스이(佐藤狂水)가 원양어업 진흥의 일환으로 1893년 6월 다케시마(울릉도)로 도항하고 그 경험을 '조선 다케시마 탐험'이라는 제목으로 산인신문에 게재했는데 그 중 조선인의 어업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토박이들은 성질이 온유하고 소박하며 항상 경작을 주업으로 한다. 어업은 전혀 종사하는 자가 없으며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단지 미역은 섬의 중요한 산물로서 잘 채취하고 내륙에 수출하는데 값이 비싸며 또한 세금을 대신한다.³⁵⁾

사토에 의하면 조선인은 농업을 주로 하고, 어업은 미역 채취뿐이며 고기잡이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5. 제2-1기 일본인의 불법 정주기(1894~1899)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조선 침략을 한층 강화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인들의 조선 진출이 더욱 왕성해졌다. 특히 울릉도에는 불법으로 침입하는 일본인들이 증가하였다. 울릉도의 도장은 이러한 일본인들의 증가를 막을 힘이 없었으므로 일본인들과의 공생을 모색하였다. 그 탓으로 일본인들의 거주가 늘어 1896(고종33년)년 이후는 200명 내외의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울릉도에 거주하게 됐다. 그들은 주로 느티나무 등을 벌채하여 일본으로 반출하였다. 이처럼 일본인들의 자유로운 불법 거주가 가능해지자 여태까지 어획물의 건조장 등에 곤란을 겪고 있었던 일본 어민들의 어업은 사실상 장애가 없어졌다. 그들은 울릉도에 위법이지만 어업 근거지를 자유롭게 설치해 지속적인 어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어업은 급속히 번성하였다. 그런 어업을 종류별로 살펴본다.

35) 山陰新聞, 「朝鮮竹島探檢」, 明治27(1894)년 2월 18일.

5-1. 전복 및 해조류 채취

일본인들의 어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부산 영사관의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 영사관보가 작성한 '수출입 통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울릉도에서 '수출' 된 해산물은 다음과 같다.³⁶⁾ 괄호 안의 금액은 현재 쌀값으로 환산한 액수이다.

1897(메이지30)년		
전복	6,000근(3,600kg),	4,200엔(1,800만 엔)
우뭇가사리	8,000근(4,800kg),	1,600엔(700만 엔)
1898(메이지31)년		
전복	6,000근(3,600kg),	4,200엔(1,800만 엔)
우뭇가사리	8,000근(4,800kg),	1,600엔(700만 엔)
1899(메이지32)년		
전복	800근(480kg),	560엔(240만 엔)
우뭇가사리	2,000근(1200kg),	400엔(170만 엔)

1899(메이지32)년에는 수출량이 격감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전복 우뭇가사리의 수확이 1899년도에 이르러 갑자기 줄어든 것은 서식(棲息)이 줄어들어 흉작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원래 울릉도의 전복 채취는 “섬에 거주하는 일본인에게 들으면, 기계선 1척 이상은 가망이 없다.”고 한다.³⁷⁾ 1899년은 잠수기선의 전복 남획으로 인하여 어획량이 격감한 것 같다. 울릉도에서의 어획이 적으면 이를 대신할 어장을 찾게 된다. 그 때문인지 1899년에 양코도(독도)에서 전복 채취가 행해졌는데, 이는 나중에 다룬다.

5-2. 오징어잡이

원래 울릉도 주변은 어류가 풍부하나 바다가 깊기 때문에 고기잡이가 쉽지 않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잡히던 것이 오징어였다. 오징어잡이는 영세한 어민도 손쉽게 할 수 있어서 오키도에서는 예로부터 번성하였다. 다만 오키에서는 계절적으로 여름에는 어업의 공백기로 된다.

36) 外務省記録 3532, 「輸出入統計表」 『樺陵島に於ける伐木關係雜件』, 明治28, 29년은 불명이라 한다.

37) 상동 자료, 「樺陵島調査概況」.

이 공백기에 오징어가 잡히는 울릉도는 더할 나위 없는 어장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거친 바다였으며 이것이 오랜 세월 오키 어민의 출어를 막았다. 목숨을 건 모험적인 출어를 제외하면 오키 어민이 울릉도에 출어하게 된 시기는 오키 치부리(知夫)군의 어민 마노 데쓰타로(眞野哲太郎)가 오키 4군이 공유하는 개량 어선을 빌려 울릉도에 시험 항해(1893)³⁸⁾에 성공한 후이다. 그러나 울릉도로의 출어는 항상 위험이 뒤따르는 일이었다. 가장 큰 해난 사고는 1897년 가을에 있었던 듯하다. 약 반년간의 오징어잡이를 끝내고 오키로 돌아가려던 열 몇 척의 선단이 리랑코도(독도) 부근에서 폭풍우를 만나 조난당했다고 한다. 겨우 목숨을 구해 귀향한 선박의 긴급보고로 오키로부터 수십 척의 배가 수색과 구조에 나섰다. 판자 한 조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³⁹⁾ 이를 계기로 울릉도에서의 오징어잡이는 잠시 주춤해졌을 것이다.

5-3. 조선인의 어업

1894년, 일본 수로부는 울릉도에서의 조선인 어업을 『조선수로지』에 이렇게 적었다.

울릉도(일명 마쓰시마)

봄과 여름 두 계절에는 조선인이 이 섬에 와서 조선식 배를 만들고 이를 본국으로 보내며 또한 대량의 개충(介虫)을 채취하고 말린다. 조선인은 배를 만들 때 쇠못을 사용하는 일이 없이 나무를 결합하며, 나무를 말려 쓰는 이로움을 몰라 항상 생목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 기사는 『환영수로지』제2권 제2판과 거의 같다. 전라도의 어민이 계속해 울릉도에서 어업을 했던 듯하다. 한편 『조선수로지』에서 울릉도의 명칭이 일본 고래의 다케시마가 아닌 마쓰시마로 됐던 것은 중요하다. 이 영향은 컸으며, 울릉도를 가리키는 예로부터의 명칭인 다케시마가 이름을 잃고 서서히 마쓰시마가 정식 명칭으로 됐던 것이다.

38) 주 11과 같음.

39) 兒島俊平, 앞의 논문, p.44. 단 조난사건 기사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6. 제2-2기 일본 정부의 정주 추진기(1899~1904)

6-1. 울릉도의 일본인

1897년, 조선은 국호를 대한제국(한국으로 약칭)으로 바꾸었는데 그 즈음부터 일본인 불량배들의 횡포가 심해져 울릉도의 치안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듬해인 1898년 한국 정부는 실태 조사를 위해 부산 해관 세무사 서리 라보떼(羅保得)를 울릉도로 파견하였다. 그 보고에 의하면 울릉도에는 이미 200여명의 일본인들이 들어와 촌락을 이루고 살며, 그 중 불량배들은 목재의 벌채나 물품 판매에 종사하여 거래 중에 그들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창과 칼을 휘두르고 폭력을 쓰므로 도민들은 이를 두려워해 안심하여 생활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⁴⁰⁾

일본인들의 목재 벌채는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자극하였다. 이 당시 러시아는 남하정책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울릉도가 가지는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 울릉도로 군함을 파견하기도 하였다.⁴¹⁾ 그 정책의 일환으로 울릉도의 목재 벌채권은 1896년의 아관파천⁴²⁾을 계기로 러시아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울릉도에서의 일본인들의 벌목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에 항의하였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 한국의 항의를 받아들여 울릉도에 머물고 있었던 일본인들을 철거시키도록 하였다. 1899년 일본 정부는 원산의 일본 영사관 서기관 다카오 겐조(高雄謙三)를 파견하여 울릉도에 사는 일본인들에게 철거 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받은 울릉도의 일본인들은 설날이 가깝고, 또 울릉도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상당수 귀국하였다. 그러나 한국 및 일본은 근본적인 재침입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일본인들 67명이 울릉도에 거주하였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거주는 일본 정부의 철수 약속을 여기므로 한국

40) 「內部來去文」7, 光武 3(1899)년 9월 15일, 조희 제13호; 유미림·조은희, 앞의 책, p.89;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第6卷(『外衙門日記』光武 3년 9월 16일), 高麗大學校, 1974, p.788.

41) 「독립신문」1899년 11월 14일.

42) 高宗 33(1896)년 2월 국왕을 러시아 공사관에 옮긴 사건.

정부는 다시 일본 정부에 항의하였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일본인들의 거주 상황을 정확히 파악 못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울릉도의 합동 조사를 제안하였다. 이 때 주목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여태까지의 잔류 일본인 철수 방침을 전환하고 일본인들의 울릉도 거주를 한국 정부에게 인정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주한 공사관 하야시 곤스케(林權助)공사는 한일 합동 조사 직전에 부산의 노세 다쓰고로(能勢辰五郎)영사에게 “당국 정부로서는 앞으로 본국인이 울릉도에 재류하는 것을 승인받게 만들 필요가 있다.”⁴³⁾는 훈령을 내리고 일본인들이 계속 재류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정책 전환의 결과 울릉도에서는 일본 정부에 의한 일본인들의 ‘정주 추진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한일 합동 조사는 조사원으로 한국 측은 내부 시찰원 우용정, 일본 측은 부산 영사관보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가 임명되었다. 그들은 고종37(1900)년 5월 31일에 울릉도로 도착하여 6월 5일까지 조사를 하였다.

합동 조사 후, 한국 정부는 다시 일본인들의 퇴거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퇴거를 명한다면 일본인들을 미혹시킬 뿐 아니라 도민들의 농산물 판매, 일용품 공급, 내륙과의 교통편을 잃게 되고, 한국 정부는 세수상의 결손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퇴거를 강요한다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퇴거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단 퇴거한 뒤 재도항자가 없으리라 보장하기도 어렵다고 하여, 한국 정부는 퇴거를 고집하기보다는 관세를 징수하고 수목 벌채에 관한 상당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현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일본 정부가 바라는 바라고 주장하였다.⁴⁴⁾ 한국의 약점을 잡아 일본인들의 잔류를 꾀하였던 것이다. 한국 정부의 통치 체제가 충분하지 못하고 경찰력이 없는 울릉도에서 잔류 일본인들의 존재는

43) 「日韓官吏蔚陵島出張に關する件」 『駐韓日本公使館記録』 제14권, 국사편찬위원회, p.527.

44)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第7卷(『交渉局日記』 光武 4년 9월 5일), 高麗大學校, p.234 ; 『舊韓國外交文書』 第5卷(「日案」5), 高麗大學校, 문서번호 5901, p.58 ; 송병기, 『제정관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 2007, p.189.

한편으로는 일본인 불량배 등 심각한 문제였으나, 한편으로는 생활상으로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였다. 울릉도에서는 양국민의 뒤뜰린 공생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아카쓰카 쇼스케의 조사(1900)에 의해 일본 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울릉도에 남아 있던 일본인들 67명의 이름과 직업, 출신지 등이 밝혀졌다. 대부분은 시마네현 출신자였으나 그 중 어업 관계자로서 돗토리현 1명, 시마네현 3명, 오이타현 2명이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⁴⁵⁾

- 마쓰모토 시게히데(松本繁榮), 1859년생, 돗토리현 사이하쿠군(西伯郡) 사이하쿠무라 평민, 어업 시찰, 1898년 음력 3월 도항, 같은 해 9월 일시 귀국, 1899년 음력 11월 25일 재 도항
- 가도 만타로(門萬太郎), 1863년생, 시마네현 치마쓰군 도쿠고무라(知末郡德郷村) 평민, 어부, 1897년 음력 3월 도항
- 가도의 처, 가메, 1868년생
- 이시즈카 산지로(石塚三次郎, 생년의 기술이 없음) 시마네현 치부리군 우라고무라(浦郷村) 평민, 어부, 1898년 음력 4월 도항
- 마쓰다 나오조(松田直藏), 26세, 오이타현 홋카이군 아사미 무이산무라(北海郡淺海無井三村) 평민, 어업, 1898년 음력 3월 도항
- 마쓰다의 처, 야히사(八九), 22세

아카쓰카의 기록은 울릉도 잔류자가 일시 귀국한 연월까지 구체적으로 적고 있으나 위의 명단에서 시찰을 목적으로 한 마쓰모토 외의 어민은 일시 귀국에 관한 기록이 없다. 그들은 울릉도에 2~3년간 계속해서 거주했다고 보인다. 보통 울릉도에 출어한 어민은 어업 시기가 끝나면 출신지로 돌아가지만, 그들은 출신지로 돌아가지 않고 울릉도에 영주한 것 같다. 그 중에 주목할 자는 “시마네현 치마쓰군 도쿠고무라 어부 가도 만타로”이다. 단 시마네현에 ‘치마쓰군 도쿠고무라’라는 지명은 없다.⁴⁶⁾ 그의 출신은 다카오 겐조의 복명서(1899.10.3)에는 ‘오키국(隱岐國) 우라고무라’이며 “주요한 자 12명” 중의 한 명이었다. 그는 오키 경찰서가 1896(메이지29)년에 기록한 “치부리군 우라고무라 어부 가도 만타

45) 外務省記録 3532, 「蔚陵島在留日本人人名原籍及渡航年限」 『蔚陵島に於ける伐木關係雜件』.

46) 內閣統計局編纂, 『府縣及北海道 境域沿革 一覽』 제1編, 1910; 영인판은 『明治大正 日本國勢沿革 資料總覽』 柏書房, 1983.

로⁴⁷⁾임으로 보인다.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그는 그로부터 4~5년 뒤에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한 ‘우라고 구미(組)’의 ‘가도 아무개’로 보인다. 또한 그는 1899년 음력 4월에 수출세 2/100를 지불한다는 ‘약조문’을 도감 오상일과 맺은 ‘대 일본국 상인’ 24명 중의 한 명이다. 어부가 도가 내는 수출세의 대상 화물은 어획물이었을 것이다.

6-2. 어업의 실상

제2-2기의 어업은 전복 채취, 상어잡이 등이다. 상어잡이 어선이 울릉도로 온 것을 구즈우 슈스케(葛生修亮)는 이렇게 적었다.

울릉도……해산물은 어류 및 전복, 해삼류가 적지 않지만 근해의 바다 어느 곳도 백 심(壽) 내지 백오륙십 심의 깊이를 넘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어잡이 주낙배가 봄철에 왕래하는 것 외에 어업은 아직 왕성하지 못하다. 다만 해안 얕은 곳에서 채취하는 우뭇가사리는 그 종류가 양호하며 특히 많은 양이 생산된다.⁴⁸⁾ (1심은 1.5m, 필자주).

주낙을 사용하는 상어잡이는 오이타현 사가노세키의 나카야 다로키치(仲家太郎吉)가 발명한 획기적인 어업으로, 오이타현이나 야마구치현의 원양 어업자가 잘 이용하고 있었다. 그 여파로 한반도 연안으로 대거 몰려와 물고기를 마구 잡고 드디어 울릉도까지 오게 된 것이다. 부산의 ‘조선어업협회’가 작성한 ‘조선해수산업의 실황(제10회 순찰보고)’(1899)의 기사 ‘상어잡이 어선 조사표’에 오이타현의 배 2척, 14명이 “동(40일 이전부터 벌어로 출어한 것이고, 필자주) 울릉도 근해 및 원산 부근에 출어하여 바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⁴⁹⁾”고 기록됐으므로 1899년에 울릉도 해역에서 상어잡이가 행해졌던 것은 확실하다.

그 후 1901(고종38)년 8월에 울릉도에서 어선 7척과 잠수부정자(潛水

47) 外務省記録 3532, 「從前 島廳を經 地方廳の許可を受け渡航する者」『蔚陵島に於ける伐木關係雜件』.

48) 葛生修亮, 「韓國沿海事情」『黑龍』 제1권 제2호, 1901, p.11; 葛生修亮, 『韓海通漁指針』, 黑龍會, 1903, p.120.

49) 『大日本水産會報』제 210호, 1899.12.15, pp.9-43; 이종학, 앞의 책, p.280.

夫艇子) 3척을 부산 해관 직원 스미스(士彌須)가 확인했다는 기사가 황성신문에 보도되었다.⁵⁰⁾ 이 기사의 대부분은 번역되어 산인신문에 ‘울릉도의 일본인’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는데, 이 기사에 의하면 일본의 배는 “모두 부산의 일본 영사관으로부터 관허를 얻은 배들이다.⁵¹⁾”고 한다. 스미스는 울릉도 문제에 깊이 관여한 부산 해관의 직원이었으므로 특히 어선이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유의했다고 보인다. 어선의 허가 신청은 통어규칙에 따라 영사관을 통해 개항지의 지방 관청에 제출하여 조사를 받은 뒤, 만 1년간의 유효 기간을 갖는 ‘면허 감찰’을 얻어, 어업세를 한국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어업세는 승조원이 4명 이하의 배가 일본 은화로 3엔, 9명 이하가 5엔, 10명 이상이 10엔으로 정해졌다. 통어규칙이 만들어진 1889년 당시의 금액을 현재의 쌀값으로 환산하면 24,000~ 80,000엔 정도이니 무척이나 저렴하였다.

울릉도로 온 어선인데 잠수부정자 3척은 전복이나 우뚝가사리를 채취하는 어선이겠지만 나머지 7척은 어떤 어선이었을까? 7척 중에 3척은 필시 잠수부정자를 지원하는 배로 보인다. 잠수부정자의 ‘정자’는 작은 배를 의미하는데⁵²⁾ 펌프나 잠수기기 등을 잔뜩 실은 작은 배가 한 척만으로 울릉도까지 항해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전복 압수사건’ 당시 “어선 4척에 잠수기 2대를 싣고” 왔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잠수기 1대에 대해 배가 2척 필요했던 것이다. 남은 4척의 어선은 오징어잡이나 상어잡이 혹은 해녀를 태운 전복이나 해조 채취 어선이었을 것이다.

이듬해 1902년에는 니시무라 게이조(西村銈象)경부의 보고서 「메이지 35년 울릉도 상황」에 따르면 8척의 잠수기선에 더하여 3척의 단선(蠶船)이 울릉도로 왔다. 수확물은 전복이나 해조류이다. 니시무라 경부는 부산 영사관에서 파견되어 4월부터 울릉도에 주재하였는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5월 30일자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이 섬의 어업 계절은 예년 3월부터 9월까지이며 수확물은 전복, 오징어, 우뚝가사리, 김, 미역 등 몇 종류에 지나지 않는다. 어업자는 거의 구마모

50) 皇城新聞, 「別報」, 光武 6(1902)년 4월 29일.

51) 山陰新聞, 「鬱陵島の日本人」, 明治 35(1902)년 5월 14일.

52) 白川靜, 『字通』, 平凡社, 1997.

토현 아마쿠사(熊本縣天草), 시마네현 오키, 미에현 시마(三重縣志摩) 지방에서 온다. 한국인 어부는 거의 없는 상태이지만 매년 전라도 삼도 지방으로부터 다수의 어부가 와서 해안에 만생(滿生)하는 미역을 채취한다. 올해는 아마쿠사, 오키의 어업자 함께 8척의 배가 도동을 근거지로 정하고 또한 시마의 잠수기선 2척과 아마쿠사의 잠수부선 1척은 저동에 오두막을 지었다. 이 모든 배가 울릉도의 온 해안을 돌고 어업을 하였으나 올해는 작년과 비교하여 굉장히 흉어이므로 이윤도 많지 않을 전망이라고 하였다.⁵³⁾

이 보고서에서 인원수는 잠수부 66, 선원 60명이다. 한편, 울릉도 재류 일본인들의 출신지는 구마모토현이 남자만 43명, 미에현의 여자는 28명이므로 합계 71명이 된다. 이 중 66명이 실제로 잠수를 하는 해녀, 혹은 잠수부로 계산되었던 셈이다. 또한, 미에현으로부터 남자 11명도 왔으나, 그들은 잠수부가 아니라, 잠수부와 조를 짜서 일하는 선원일 것이다. 기타 어부는 잠수기선 8척으로 전복이나 해조를 채취한 것 같다.

이처럼 잠수부 66명에 선원 60명이 전복이나 해조를 채취한다면 분명히 남획이며 어업 자원은 고갈되어 흉어는 당연하다. 그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어장을 찾아 독도로 향한 것 같은데 이는 후에 다시 다룬다.

6-3. 한국인의 어업

1899년 황성신문은 울릉도에서의 한국인의 어업을 이렇게 전하였다.⁵⁴⁾

울릉도 상황

거민은 남녀 약 300명으로 수십 년이래로 점차 장인, 상객과 어부, 농부가 뒤이어 거주하는데, 바다는 물길이 깊어 고기잡이가 번성하지는 않지만, 해채(海採)의 반출이 매년 2,000단(担)에 달한다……

농민이나 상인의 과세는 규정이 없고, 단지 도감이 해조류 채취에는 심분의 일을 징수하고, 나무 값으로는 배 1척당 엽전 100량을 징수한다.

53) 外務省記錄 616-10, 「明治三十五年嶺島狀況」 『釜山領事館報告二』; 「韓國嶺島事情」 『通商彙纂』, 제234호, 1902.10.16, pp.43-51.

54) 皇城新聞, 「別報 嶺島 事況」, 1899(光武 3)년 9월 23일.

장인이나 어부들은 이규원이 『울릉도 검찰일기』에 적은 것처럼 전라도 삼도(거문도)나 초도 지방 등의 출신자들이다. 그들은 봄에 울릉도에 와서 배를 만들고 미역을 채취하여 가을에는 출신지로 돌아가는 통어자(通漁者)들이다. 그들은 조선(造船) 1척당 100량을 목재 값으로 바쳤다. 100량은 20엔에 상당하며,⁵⁵⁾ 현재의 쌀값으로 87,000엔에 상당한다. 또한 해조류 채취에는 1/10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한편, 한국인들의 미역 채취에 대해서는 부산의 일본 영사관이 1902년에 이렇게 적었다.

한국인 어부는 전혀 없는 상태이지만 매년 전라도 삼도 지방으로부터 다수의 어부가 와서 해안에 만생(滿生)하는 미역을 채취한다.⁵⁶⁾

위의 보고서에서 전라도 어부들이 배를 만든다는 기술이 보이지 않는다. 필시 1900년의 한일합동 조사 당시에 우용정이 한국인들의 벌목도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 후는 배를 만드는 일이 불가능해졌을 것이다.

6.4. 독도 주변에서의 어업

독도 주변에서는 많은 물고기나 바다짐승을 볼 수 있지만 바다가 깊어 그 당시의 기술로는 고기잡이가 어려웠다. 게다가 섬에는 어선을 계류하는 장소나 음료수가 없으므로 어업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독도 주변의 어업에 관하여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은 『다케시마(竹島) 및 울릉도』에서 이렇게 적었다.

이 섬(독도, 필자 주)에서 장차 유망한 어업은 강치잡이뿐이며 전복을 잡수기로 따는 것도 약간 전망이 있는 것 같다. 김이나 미역은 온 섬에 군생하지만 겨울철은 파도가 높기 때문에 도항하여 채취할 방도가 없고, 상어는 여름철에 모여들 수도 있지만 아직 포획한 자가 없다. 낚시는 겨우 출어한 자의 식량이 될 정도다. 요컨대 이 섬에는 음료수가 없고 또한

55) 葛生修亮, 앞의 책, p.122.

56) 주 53)과 같음.

어항이 없으므로 강치잡이 어업자가 겨우 여름철 수개월간 도항하여 어업을 하는 것 외에는 거의 기대할 수 있는 어업은 없는 것 같다.

오쿠하라는 독도는 어장으로서는 매력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 오쿠하라의 분석을 살펴본다.

1) 상어잡이

오쿠하라는 상어는 아직 포획한 자가 없다고 적었지만 기록상으로 상어잡이를 확인할 수 있다. 1899년에 오이타현의 어선 2척 14명이 울릉도 근해에 출어한 것은 앞에 언급한 바인데 이 어선은 물고기를 쫓던 중에 독도를 '발견'한 것 같다. 1901년에 발간된 『지학잡지』는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일본해 중의 한 도서(양코)

지난 4월 중순 도쿄 발행의 각 신문은 일본해 중에 한 도서를 발견한 것을 보도하였다. 그 말에 따르면 한국 울릉도에서 동남 30리(120km, 필자 주) 우리 일본국 오키에서 서북쪽으로 거의 같은 거리 떨어진 해상에 아직 세상 사람이 모르는 하나의 도서를 발견하였다. 이 섬은 아직 우리나라 해도에는 실리지 않았고 영국의 해도에도 기재되지 않았지만 그 섬의 존재는 확실하며 지금도 울릉도에 있는 일본인들은 날씨가 맑은 날에 산의 높은 곳에서 동남을 바라보고 아득히 섬 윤곽을 확인했다고 한다. 지금 이 섬의 발견에 관한 역사를 들으니 1-2년 전 큐슈(九州) 근방의 잠수기선 1척이 어족(魚族)을 쫓아 멀리 해중에 갔더니 못 보던 곳에 하나의 도서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여 기쁘게 이를 근거지로 삼아 사방의 바다를 찾아다니자 그 근처는 서식하는 어족이 굉장히 많았으나 강치 수백 마리가 떼를 지어 잠수기선을 막았기 때문에 결국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한일 어민은 이 섬을 양코라고 부른다고 한다.⁵⁷⁾

이 문장을 쓴 『지학잡지』 편집자는 어업의 실상을 몰라서 상어잡이와 전복 채취를 혼동하여 쓴 것 같다. 본래 잠수기선은 바닷가에서 전복이나 해조를 채취하며 결코 어족을 쫓아 바닷가를 떠나는 일은 없다.

57) 「日本海中の一島嶼(ヤンコ)」, 『地學雜誌』, 제13집, 제149권, 1891년 5월, p.301.

한편 상어잡이는 잠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주낙을 쓰며 상어를 쫓아 먼 바다에 가는 것이 일상사다. 아마 실상은 처음에 울릉도를 기지로 하는 상어잡이 어선이 독도를 '발견'하고 그 소식을 들은 잠수기선이 전복을 따기 위하여 울릉도에서 독도로 출어한 것 같다. 어업의 실상을 잘 아는 구즈우 슈스케(葛生修亮)는 위 문장을 정리하여 독도에서의 상어잡이를 1901년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양코도'

(전반은 후술함, 필자 주) 또한 부근에는 상어잡이의 좋은 어장이 있다. 수년 전부터 5~6월이 되면 오이타현 상어잡이 어선이 이어 출어하는 일이 있다. 작년 봄에 그곳에서 귀향한 어부의 말을 듣자면 출어한지 아직 2~3회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계절마다 상응한 어획량이 있었고, 종래의 경험상 이 어장의 상태 및 상어 서식이 많은 것으로 보건데 반드시 좋은 어장임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한다. 상어잡이 어업자들을 위해서는 더욱 충분한 탐험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⁵⁸⁾

구즈우가 들은 이야기로는 오이타현의 어부는 1900년 봄까지 양코도에서 2-3회 상어잡이를 했다고 한다. 상어잡이의 출어는 1회당 수개월은 걸리므로 그 어부는 1899년 이전부터 울릉도나 독도에서 상어잡이를 하여 '상응한 어획'을 얻었던 셈이 된다. 또한 앞의 『지학잡지』에서는 큐슈 근처의 어선이 '1~2년 전'에 독도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1~2년 전은 1899~1900년이 된다. 이 두 기사와 앞의 '조선어업협회'의 「상어잡이 어선 조사표」에서 1899년의 기사를 종합하면, 오이타현의 어선은 1899년 3-4월에 울릉도를 기지로 하여 상어를 쫓는 동안에 독도를 '발견'한 듯하다. 오이타현이 큐슈에 속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2) 전복 채취

오쿠하라가 "다소 전망이 있다"고 한 전복 채취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실한 증언으로는 1883년에 구마모토현 아마쿠사군의 나카우라 이헤이지(中浦伊平次)가 울릉도에서 돌아오는 길에 독도에 들러 전복을

58) 葛生修亮, 앞의 논문, p.13 ; 葛生修亮, 앞의 책, pp.123-124.

채취하고 강치를 잡았다는 증언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말한 바나카우라 이해이지 손자의 증언이며 명확하지 않다. 또한 1890년경 미에현 시마군의 하마구치 세이베(浜口清兵衛)도 울릉도에 왕복하던 중에 또는 울릉도에 체재하던 중에 독도에서 전복과 해조를 채취했다는 증언도 있으나, 이것도 앞장에서 쓴 바 하마구치 세이베 손자의 증언으로 명확하지 않다. 출어년도가 1905년이라면 가능성이 있다. 독도에서의 전복 채취가 기록상으로 확인되는 시기는 울릉도에서의 전복 채취가 부진했던 1899년이다. 구즈우 슈스케는 앞의 '양코도' 기사의 앞 부분을 이렇게 적었다.

울릉도로부터 동남쪽 약 30리, 우리 오키 국(國) 서북으로 거의 같은 거리의 바다에 무인도가 하나 있다. 날씨가 맑으면 산봉우리의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한국인과 우리나라 어부들은 이를 양코도라고 부르며 길이는 거의 십여 정이며 해안의 굴곡이 아주 많아 어선을 정박하고 풍랑을 피하는 데 좋다. 그러나 땀감이나 음료수를 구하기가 아주 어려워 땅에서 수 척 아래를 파도 쉽게 물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한다. 이 섬에는 해마가 많이 서식하고 있고 근해에는 전복, 해삼, 우뭇가사리 등이 풍부하다. 수년 전 야마구치현의 잠수기선이 희망을 품고 출어한 자가 있었으나 잠수를 할 때 무수한 해마 무리의 방해로 받았고, 음료수의 결핍 때문에 충분한 작업을 하지 못한 채 되돌아왔다고 한다. 생각하건대 당시의 계절은 마침 5~6월로 해마의 출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히 그 방해로 받았던 것이 아닐까.⁵⁹⁾

구즈우가 이 문장을 쓴 시기는 1901년이므로 문장 중의 수년 전이라 함은 1898~1899년 즈음이다. 앞의 『지학잡지』 기사 등을 고려하면 야마구치현의 잠수기선이 출어한 시기는 1899년이며 울릉도에서의 전복 채취가 흥어였던 해와 일치한다. 그리고 계절은 5~6월이며 오이타현의 상어잡이 어선이 독도로 출어한 1~2개월 후이다. 아마 실상은 야마구치현의 잠수기 어업자가 울릉도에서의 전복 따기가 흥어였으므로 오이타현 어선이 '발견'한 독도의 정보를 얻어 울릉도에서 독도로 출어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복 채취는 번식기의 강치 무리의 방해로 받아 충분한 수확을 얻지 못했던 듯하다.

59) 상동.

다음으로 독도에서의 전복 채취가 확인되는 것은 역시 울릉도에서 과다한 출어가 행해진 1902년이다. 이 해에도 울릉도에서 리양코도(독도)로 출어한 것 같으며 부산의 일본영사관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이 섬(울릉도, 필자주)의 정 동쪽 오십 해리에 3개의 작은 섬이 있다. 이를 리양코도라고 부르며 우리나라 사람은 마쓰시마라고 칭한다. 그곳에 다소의 전복이 산출되므로 이 섬에서 출어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그 섬에는 음료수가 모자라서 오랫동안 출어하지 못하므로 45일이 지나면 울릉도로 귀항한다.⁶⁰⁾

울릉도로부터 출어한 어민은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하여간 울릉도에 거주하는 어민이 리양코도(독도)로 출어하여 4~5일 만에 울릉도로 돌아왔다. 리양코도는 섬이 작으므로 전복의 절대량이 적다. 오쿠하라 헤키운에 의하면 독도는 “협소한 바위섬으로 2-3일이면 채취할 곳이 없어진다.⁶¹⁾”고 한다.

3) 강치잡이

독도에 강치 무리가 서식하고 있음은 오키도에서는 일찍이 알려져 있었다. 산인신문의 기사(1894. 2. 18) 「조선 다케시마 탐험」은 “이 섬(리랑코도)에 바다짐승 강치가 서식하며, 그 수는 수백 마리를 헤아린다. 우는 소리가 아주 시끄럽다.”고 기록하였다. 다케시마는 울릉도, 리랑코도는 독도를 가리킨다. 또한 강치는 일본에서 도도 혹은 미치라고 불린다.

근대에 들어서서 강치잡이가 확인되는 것은 1897년이다. 울릉도에서 오키로 돌아가던 오징어잡이 어선이 리랑코도 부근에서 조난하였다. 그 배의 탐색 활동이 벌였는데 이때 강치잡이가 행해졌다고 한다. 이를 오쿠하라는 이렇게 적었다.

지금부터 8~9년 전 오키 국의 어부가 울릉도에서 난파한 어선의 탐색을

60) 주 53과 같음.

61) 奥原碧雲(福市), 『竹島及鬱陵島』, p.11.

위하여 이 섬(독도, 필자주)에 도항했을 때 강치 무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보고 5~60마리를 잡아 내지(内地)로 보내고 상당한 이익을 얻었던 일이 있었다.⁶²⁾

오쿠하라가 말하는 지금은 위의 원고를 완성한 1906년이므로 그 8~9년 전은 1897~8년 즈음이다. 앞의 오징어잡이 어선의 조난 사건(1897)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필시 오키 어민은 조난선을 탐색하는 김에 강치잡이를 한 것 같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청취 조사에 의하면 1897년에 “오키의 오치군 고카무라(穩地郡五箇村)에 사는 이시바시 마쓰타로(石橋松太郎)와 시로 하루이치(代春一)도 소형 어선으로 다케시마로 출어하여 강치잡이를 하였다.⁶³⁾”고 하므로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같은 청취 조사에서 “이시바시는 그 후도 매년 다케시마에 건너가 일정 기간 머무르며 강치를 잡았던 것 같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의문이다. 이시바시가 다시 강치잡이에 나선 것은 1903(페이지 36)년일 것이다. 그 해에 이시바시와 나카이 요자부로가 행한 강치잡이를 오쿠하라는 이렇게 적었다.

페이지 36년 하쿠슈 도하쿠군 고가모무라(伯州東伯郡 小鴨村)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씨(현 오키국 사이고(西郷) 거주)가 리양코도의 강치포획을 기획하자 동향 사람 고타라(小原) 육군 보병 군조(軍曹)가 대찬성하여 궤연히 일어나 스스로 대장이 되어 폭 8척 길이 4간 (7.2m, 필자주)의 어선에 올라 일본해의 풍랑을 헤치고 시마타니 곤조(島谷權藏) 이하 장부 7명을 이끌고 리양코도에 상륙하여 처음으로 일장기를 바위 위에 세운 것은 페이지 36년 5월 모일의 일이었다. 우연히 도젠(島前)의 이시바시 마쓰타로 부하의 어부도 도항하여 함께 포획에 종사했으나 준비 부족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다음 해의 어기를 기다리며 대 발전을 기약하고 귀항하기로 하였다.⁶⁴⁾

나카이들이 출어한 5월경은 강치의 번식 계절에 해당하며 이 섬에 강치가 모여든다. 나카이는 그것을 노려 강치잡이에 나섰으나 좋은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 시험적인 강치잡이에 관해 나카이 자신도 “포획

62) 위의 책, p.7.

63) 川上健三, 앞의 책, p.202.

64) 奥原碧雲, 앞의 책, p.27.

하는 법이나 제조법이 분명치 않고 용도나 판로도 확실하지 않다. 공연히 많은 자본을 잃고 여러 쓴맛을 보았다.⁶⁵⁾”고 적어 강치잡이 사업에 고생했다고 썼다. 또한, 오쿠하라에 의하면 이시바시는 “함께 포획에 종사했으나 준비 부족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므로 이시바시가 1897년부터 계속해 매년 강치잡이에 나섰다고는 볼 수 없다. 1897년 즈음에는 강치잡이만으로는 채산이 맞지 않았던 듯하다. 그 후 시기적으로 “러일전쟁 직전에 가죽이나 기름 값이 치솟고 있었던 상황을 보고 다케시마에 군집하는 강치에 주목하게 되어⁶⁶⁾” 1903년에 시험적으로 강치잡이를 한 것이다.

1903년 고하라 군조(중사급)는 직접 대장이 되어 나카이를 데리고 도해하고, 그 대원이 리양코도에 일장기를 세웠다고 하나, 리양코도가 일본 영토라면 일부러 일장기를 세울 필요는 없다. 고하라 군조 일행이 깃발을 세운 것은 이 섬을 일본 영토로 만들고 싶다는 희망의 표현일 것이다. 원래 동행자인 나카이조차 “리양코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믿고⁶⁷⁾” 있었다.

7. 제3기 일본 제국의 침략 강화기(1904~1910)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본 제국이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강화함에 따라 일본인들의 조선 진출도 더욱 활발하게 되었다. 울릉도에서는 오징어잡이가 급속히 번성하였고 일본인 거주자들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일본인의 수는 1905년 4월 89호 251인이었으나, 5월에는 98호 341인, 6월에는 110호 366인으로 되고,⁶⁸⁾ 1909년 말에는 224호 768인으로 급증하였

65) 外務省記録 1417, 『帝國版圖關係雜件』, 「リャンコ島領土編入並ニ貸下ケ方 島根縣民中井善三郎(養三郎의 잘못, 필자 주)ヨリ願出ノ件 明治三十七年」.

66) 堀和生, 「一九〇五年 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 24号, 1987, p.110.

67) 奥原碧雲, 앞의 책, p.27; 中井養三郎, 「履歷書」(『竹島資料 7』 島根県立図書館所蔵)에도 같은 기술이 있음; 島根縣教育界 『島根縣史』, 1923, p.691.

68) 주 31과 같음.

다.69) 연말에는 인구가 줄 경향이 있음을 고료하면, 제 3기에 일본인의 인구는 4년간에 적어도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7-1. 어업의 실상

1905년에 부산 영사관보 스즈키 에이사쿠(鈴木榮作)가 외무대신에게 제출한 「울릉도 현황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1904년 및 1905년에 수출된 해산물의 양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⁷⁰⁾ 단지 강치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안은 시마네현의 가타오카(片岡) 아무개가 조사한 숫자이다.⁷¹⁾

1904(메이지 37)년

말린 전복	50관(190근)	187엔(114엔)
말린 오징어	1,707관(1,173관)	1,707엔(1,173엔)
김	138관(1,383관)	414엔(3,872엔)
미역	110,570파(747속)	1,383엔(1,868엔)

1905(메이지 38)년

말린 전복	9,100관(970근)	8,050엔(582엔)
말린 오징어	1,479관(1,499관)	1,529엔(1,500엔)
김	174관(174관)	524엔(525엔)
미역	53파(53속)	74엔(50엔)
전복 통조림	35관(10개)	343엔(96엔)

가타오카가 조사한 숫자가 영사관 보고와 크게 다른 것은 1904년의 김과 1905년의 말린 전복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말한다면,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은 1904년의 김에 관해서는 영사관의 숫자를 사용하고 1905년의 말린 전복에 관해서는 가타오카의 숫자를 사용하였다.⁷²⁾ 오쿠하라의 견해가 맞는 것일까. 한편 영사관 「보고서」는 위의 통계를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69) 농상공부, 『韓國水産誌』 제 2집, 농상공부, 1901, p.711.

70) 外務省記録616-10 「檜陵島の現況に関する報告書」 『釜山領事館報告2』, 明治38年12月.

71) 농상공부, 앞의 책, p.716.

72) 奥原碧雲, 앞의 책, p.46.

奥原의 숫자가 영사관 보고와 다른 점은 말린 전복 이외에는 1905년의 말린 오징어가 1500貫 1499匁, 미역이 53束 79匁으로 되고 있다.

(1) 오징어 주요 수출품의 하나로 한국인은 어획하는 자가 없고, 오로지 일본인들이 잡는다. 5월에서 7월까지를 초기로 하고 이때 잡히는 것을 여름 오징어라고 부른다. 다음으로 9월까지 잡히는 것을 가을 오징어라고 부르며 9월을 끝으로 한다. 양 기간에 섬의 모든 연해에 엄청난 오징어가 떼를 이루며, 어업자들 아니든 간에 이를 포획하여 말린 오징어로 만들어 수출한다. 그 수출액도 해마다 증가한다.

(2) 김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온 섬의 해안 일대에 자라, 섬에 채취하는 부녀자의 손에 의해 채취된다. 해마다 채취량은 증가하나 그 채취 방법이 불완전하고 제조 방법이 좋지 않아 천연의 풍미를 많이 잃은 듯하다. 그러므로 그 방법이 개량된다면 장래 중요한 수출품이 될 것이다.

(3) 전복 채취 일본인들이 채취하는 것은 없고 우리나라 시마 지방의 기계선 2~3척 및 잠수부 30명 정도가 매년 5월에서 9월 사이에 섬에 와서 채취한다. 올해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

(4) 미역 온 섬 도처에 생산되나 한국인들의 독점 사업이며 일본인들의 채취는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일본인들이 채취에 착수한다면 한국인들의 채취 방법이 유치하므로 일본인들이 착수하자마자 재원을 탈취당하게 될 것이며 그들과 우리들 간에 커다란 분쟁이 일어날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아직 일본인들 중에는 이를 채취하는 자가 없다.

이 해설은 『대일본수산회보』 제 282호(1906.2.10)에 「한국 울릉도의 수산」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또한 같은 해 7월에도 부산 주재 영사관의 보고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외무성 『통상회찬』 제50호 및 『관보』(1905.9.18)에 「울릉도 현황」이란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그 속에 전복 채취는 이렇게 기록됐다.

전복의 채취량은 올해 4월 구마모토 현민 요시무라(吉村) 아무개가 잠수기 2대를 가지고 채취에 종사하여 잠수기 1대당 1일 평균 약 300근의 생복을 채취하고 미에 현민 하마구치(濱口) 아무개는 올해 5월 어선 2척에 잠수부 32명, 선원 10명을 데리고 와서 하루 평균 약 530근 안팎을 채취하였다.

생복은 건조하면 근 수는 약 10분의 9가 감소하고, 생복 300내지 530근을 말리면 30근 내지 53근으로 줄어든다고 한다.⁷³⁾ (1근은 0.6kg, 필자주)

두 사료에 미에현의 잠수부나 수부 약 30명이 출어하여 전복을 채취

73) 주 31과 같음.

한 것은 공통되지만, 잠수기 어업자의 출신이 다르다. 구마모토와 미에현의 잠수기 어업자가 다른 시기에 출어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 3기의 수산물 수출량은 전술한 가타오카의 통계가 『한국수산지』 제2집에 게재되었다. 그 금액만을 베끼면 다음과 같다.

표 2-1 | 울릉도 수산물의 수출고(엔)

	1904년	1905년	1906년	1907년	1908년
말린 오징어	1,173	1,500	11,416	39,824	26,046
김	3,872/414*	525	1,488	1,046	1,726
우뭇가사리	-	-	126	31	646
말린 전복	114	582	469	1,653	3,808
전복 통조림	-	96	-	-	350
미역	1868	50	3,618	4,536	2,644
합계	7,027/3,569*	2,753	17,117	47,090	35,220

주 : *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 『竹島及鬱陵島』에 의한 숫자

말린 오징어에 관해 경상북도가 1914년에 울릉도로부터의 출하액을 통계로 냈는데, 그 숫자는 아래 표와 같다. 표에는 참고로 현재 가치도 표시한다.

표 2-2 | 말린 오징어 누년(累年) 이출표(移出表)⁷⁴⁾

연	수료(관)	단가(엔)	가격(엔)	현재 가치(만원)
1905	1,999	1.000	2,000	780
1906	9,928	1.150	11,416	4,133
1907	33,186	1.040	39,823	13,452
1908	20,714	1.280	26,447	9,259
1909	35,295	0.985	35,017	13,173
1910	70,464	1.300	91,682	33,418
1911	87,338	1.250	109,562	33,986
1912	130,000	1.000	130,000	34,736
1913	136,000	1.040	136,052	37,101

74) 「慶尙北道鬱島 水産狀況」, 『朝鮮彙報』, 大正 4(1915)년 3월 1일호, p.82.

이 표에서 1908년까지의 숫자는 『한국수산지』의 금액과 거의 일치한다. 말린 오징어의 수출액이 1910년에는 현재의 쌀값 환산으로 3억 엔을 넘었다. 오징어잡이가 울릉도의 유력한 산업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7-2. 강치 잡이

1903(메이지 36)년에 강치 잡이가 시험적으로 행해진 것은 앞에선 바와 같은데 이듬해에 강치잡이가 유망하다는 소문이 퍼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독도로 강치잡이에 나섰다. 이 모양을 나카이 요자부로는 이렇게 적었다.⁷⁵⁾

올해 들어 강치 포획에 경쟁이 생겨 포획하는 때는 처음에는 3척 나중에는 6척이 사용되고 그 1기간의 포획량은 대략 다음과 같다(날날이 영업자로 하여금 정확하게 조사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본 대략의 수를 쓴 것이므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一. 수컷 850마리, 어망 포획 5~6(60의 잘 못? 필자 주), 그 외에는 총살, 염피(鹽皮) 약 6000관(貫), 1장 평균 약 7관
- 一. 암컷 900마리, 어망 포획 5~60, 그 외에는 총살, 염피 약 1440관, 1장 평균 약 1관 600목
- 一. 유아(乳兒) 1,000마리, 모두 박살, 염피 약 250관, 1장 평균 약 250목
계 2,760마리, 염피 7,690관, 한 장 평균 2관 786목

1904년에 출어한 어민들은 2,760마리의 강치를 잡았으나 지나친 남획으로 새끼마저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다. 더구나 잡아들였으나 “공연히 폐기된 새끼의 수도 4~500마리 이상을 헤아렸다”는 상태였다. 한편, 이 해에 울릉도 주민들도 강치 잡이에 나선 것은 특필할 만하다. 군함 니타카(新高)의 행동일지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군함 니타카 행동일지』 1904년 9월 25일

75) 中井養三郎, 『リヤンコ島』領土編入并貸下願説明書, 『竹島資料 7』, 島根県立図書館所蔵.

「마쓰시마에서 『리앙코루도』암을 실제로 본 사람에게 들은 정보」
『리앙코루도』암 한국인들은 이것을 독도라고 쓰며 우리나라 어부들은 『리앙코』도라고 호칭한다. … 마쓰시마로부터 도항하여 강치 잡이에 종사하는 자는 6·70석 적(積)의 일본식 배를 이용하여 섬 위에 오두막을 짓고 매회 약 십 여일 간 체재하여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군함 니타카 일지에 의하면 1904년에 마쓰시마(울릉도)에서 강치잡이에 출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출어한 어민들 중에는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울릉도의 개척민 홍재현은 1947년 8월에 증언을 통하여 “나도 당시 김양윤(金量潤)과 배수검(裴秀儉) 동지들을 작반하여 거금(距今) 45년 전(묘년) 부터 4·5차나 감괘(甘藷)채취나 엽호포획(獵虎捕獲)차 왕복한 예가 있음⁷⁶⁾”이라고 진술하였다. 45년 전(묘년)은 1903년인데, 그 해부터 독도에서 해조 채취를 시작하여 강치 잡이까지 한 것 같다. 또한 나카이 요자부로의 보고에 의하면 1904년에는 나카이 외에 오키도로부터 이시바시 구미(石橋組), 이구치 구미(井口組), 가토 쥬조(加藤重藏)가 출어하는 한편 울릉도에서 야마구치현의 이와사키(岩崎) 아무개가 “한국인을 데리고 왔다.⁷⁷⁾”고 한다. 이 한국인은 홍재현 등으로 짐작된다.

다음 해 1905년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울릉도로에서 출어한 어민이 늘어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공동으로 3조나 강치잡이에 나섰다. 그런 강치잡이를 1905년 7월의 부산영사관 보고는 이렇게 적었다.

‘도도’라고 부르는 바다짐승은 울릉도로에서 동남쪽 약 25리에 위치하는 랑코도에 서식하고 있으며, 작년 즈음부터 울릉도민이 잡기 시작하였다. 포획 기간은 4월부터 9월에 이르는 6개월간이며, 어선 1조 당 사냥꾼 및 수부 등 10명으로 평균 하루에 5마리를 잡는다고 한다. 이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30인, 어선 3조가 있다. ‘도도’ 1마리당 현재 시가는 평균 3엔 정도이다.⁷⁸⁾

‘랑코도(독도)’의 강치잡이에 종사한 울릉도의 ‘어선 3조’ 30인은 나카이 요자부리가 작성한 「다케시마 강치 실황 각서」⁷⁹⁾에 쓰여 있는

76) 洪在現, 「陳述書」, 『獨島問題概論』, 外務部, 1955, p.35.

77) 中井養三郎, 「明治參拾七年中ノ調査」; 川上健三, 앞의 책, p.188.

78) 주 31과 같음.

아래의 3조 29인 것 같다. 그 이유는 이 3조는 한국인과 일본인으로 이루어졌는데 한국인들이 오키에서 출항했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도항 날짜와 인 수, 선박 수, 포획량 등은 다음과 같다.

이와사키 구미(야마구치현 이와사키 아무개), 4월 10일, 10인[한국인 7, 일본인 3], 2척, 약 200여 마리

누마타 구미(沼田組), (우가(宇賀), 누마타 쇼타로(沼田庄太郎)), 4월 14일, 9인[한국인 6, 일본인 3], 2척, 200여 마리

우라고 구미(浦郷組), (우라고무라(浦郷村) 가도(門) 아무개 외 2명), 4월 14일, 10인[한 3, 일 7], 2척, 200여 마리

이 기록에 향해 연도의 기록이 없으나, 글 중에 같은 해에 밀렵을 단속하는 경찰관이 상륙한 기사 등이 있으므로 이 자료를 필사한 다무라 세이사부로(田村清三郎)는 그 해를 1905년으로 보았다. 타당한 듯하다. 울릉도에서 출어한 자들이 잡은 강치는 울릉도의 수출 통계에 이렇게 기록되었다.⁸⁰⁾ 하기 ()의 금액은 현재의 쌀값 환산이다.

1904(메이지37)년

도도의 가죽 800관(3,000kg) 600엔(240만 엔)

도도의 기름 2석(360 L) 26엔(10만 엔)

1905(메이지38)년

도도의 가죽 1,275관(4,800kg) 1,275엔(500만 엔)

도도의 기름 49석 (8,820 L) 730엔(280만 엔)

도도의 유박 950관(3,600kg) 190엔(74만 엔)

또한 위의 '어선 3조' 이외에도 강치 잡이를 한 그룹은 앞서 쓴 「다케시마 강치 실황 각서」에 의하면 5조가 있다. 그들은 시마네현 오키도에서 4조, 돗토리현에서 1조이다. 그들의 조 이름과 입도 날짜, 인 수, 선박 수, 포획량 등은 다음과 같다.

79) 앞의 『竹島資料 7』; 川上健三, 앞의 책, p.188.

80) 外務省記録 616-10, 「鬱陵島の現況に關する報告書」, 『釜山領事館報告2』, 明治 38년 12월. 수출액은 奥原碧雲의 앞의 책 p.46에도 게재되었는데, 그 책에는 메이지 38년의 도도의 가죽은 800貫·700円, 도도의 기름은 83箱·124円, 도도의 유박은 150貫, 34円로 되어 있다. 영사관 보고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구미무라 구미(久見村組), (하시오카 도모지로(橋岡友次郎) 외), 3월 30일, 6인, 1척 228마리 (나카이의 공동 경영자, 필자 주)
 이구치 구미(井口組) (이구치 류타(井口龍太) · 나가우미 간이치(永海寬市) 조합), 4월 12일, 12인, 2척, 300마리 (나카이의 공동 경영자, 필자 주)
 이미무라 구미(飯美村組), (이미무라 아무개 외), 4월 11일, 7인, 2척, 3백 수 십 마리
 시모니시 구미(下西組), (시모니시무라 아무개 · 니시마치 아무개 조합), 4월 18일, 8인, 2척, 200여 마리
 아카자키 구미(赤崎組), (돗토리현 아카자키 아무개 등), 6월 4일, 8인, 2척, 50여 마리

이처럼 오키도 및 돗토리현에서 온 5조 36명과 울릉도에서 온 3조 29명, 합계 8조 65명이 이 때까지 1,800마리의 강치를 포획했는데 나카이 요자부로는 이들 모두를 '밀렵꾼'으로 취급하였다. 나카이의 공동 경영자인 하시오카 도모지로나 이구치 류타마저 밀렵꾼으로 부른 것은 그들이 강치 잡이에 나선 때가 시마네현의 허가 날짜 이전이기 때문이다. 시마네현의 허가는 1905년 6월 5일자로 나카이, 하시오카, 이구치, 가토 쥬조(加藤重藏) 등 4인의 공동 출원에 대해 행해졌다. 일찍이 나카이는 일본 정부에 「리앙코도 영토 편입 및 대하원(貸下願)」을 제출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나, 강치 잡이는 그의 바람대로 독점사업이 되지 않았다. 나카이는 시마네현의 지도에 따라 공동 경영을 위한 '다케시마 어렵 합자회사(竹島漁獵合資會社)'를 설립하였다. 그는 이 회사의 모선을 타고 6월 8일 독도에 상륙하였다. 이때 단속 경찰도 함께 상륙했다고 한다. 그 결과 "그들(밀렵자, 필자 주)은 실망하고 낭패하여 어사(漁舍)와 수렵 도구를 회사에 팔아넘기고 철수"했다고 한다.

나카이가 독도에 상륙한 일주일 후, 군함 하시다테(橋立)가 독도에 망루를 건설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6월 15일에 이 군함 함장 후쿠이 마사요시(福井正義)는 나카이들의 강치 잡이를 이렇게 적었다.

이 섬은 지금 강치 사냥철이며 오키국으로부터 온 사냥꾼(오히려 어부임)이 35~6명에 달하고 소총과 그물을 사용하여 강치를 잡는다. 포획이 풍부

하므로 볼 만하다. 짧은 시간 관찰하던 중 그들과 대화를 나누어보니 참 고할 만한 가치가 있어 그 대략을 적는다.

이 섬은 강치 잡이의 좋은 장소로서 사냥꾼은 음력 4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머물며 연일 강치 포획에 종사한다. 강치로부터 얻는 것은 가죽과 기름으로 이것을 오사카 지방에 보내고 매년 얻는 금액이 4천 엔 내지 5천 엔에 이른다고 한다.

사냥꾼들을 지휘하는 자는 오키국의 나카이 요자부로라고 하며, 본인의 말에 의하면 혹 지원자가 있으면 올해는 겨울에도 머물며 이 섬에서 겨울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 강치 외에 소량의 전복을 수확한다고 한다……

이 섬에는 딸감과 물이 없으므로 매월 1~2회 범선으로 오키국과 교통하여 양식과 딸감, 기타 모든 공급을 받는다고 한다.⁸¹⁾

이 증언에 의하면 오키에서 온 어부는 35~6명이며, 그들은 음력 4월 즈음 독도에 와서 음력 7월 중순까지 강치 잡이를 계속한다. 그 동안의 식량과 물 등은 오키로부터 매월 1~2회 공급받는다고 한다.

이렇게 1905년에 포획한 강치의 포획량은 앞의 1,800마리 이외에 나카이의 회사가 잡아들인 강치 1,003마리, 금액은 2,560엔이 된다는 것이 「이력서」에 기록되었다. 이들을 합하면 1905년에 포획한 강치의 합계는 2,803마리가 된다. 제3기에 잡은 강치의 수와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 | 독도에서의 강치 포획 현황⁸²⁾

연도	포획 수(마리)	금액(엔)	현재의 화폐가치(만 엔) *
1904	2,760	불명	
1905 (메이지38)	1,800	불명	(나카이 외의 분)
	1,003	2,559	998
1906	1,385	5,437	1,968
1907	1,600	5,940	2,007
1908	1,680	5,878	2,058
1909	1,152	4,344	1,634
1910	679	2,317	845
1911	796	불명	

주 : 부록 '메이지 시대의 화폐가치'(3년 평균)에 따라 산출

81) 「戰時日誌 軍艦橋立」, 明治 38(1905)년 6월 15일, 防衛研究所所藏.

82) 中井養三郎, 「履歷書」, 『竹島資料 7』.

1910년 이후의 포획량이 적은데 이는 나카이 일행이 치시마(쿠릴) 열도에서도 강치잡이를 시작했기 때문에 독도에 나간 인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7-3. 한국인의 어업

한국인의 강치 잡이는 앞 절에 썼으니 이 절에는 그 외의 어업에 관해 쓴다. 한국인의 어업은 제3기에 들어서도 미역 등 해조 채취를 주로 하였으며 고기잡이는 드물었다고 한다. 그 실상을 부산의 일본영사관이 1905년에 외무성에게 이처럼 보고하였다.

이주자(한국인, 필자 주)는 농업을 전업으로 하며, 농사가 한가한 틈을 타서 해산물 중 미역, 김 등을 채취하는 외에 드물지만 어업에 종사하는 자도 있다……한국인이 어업에 종사하는 자는 적으며 어업의 도구도 불완전하여 전 도민의 수요조차 충족시키지 못한다.⁸³⁾

종래, 한국인들은 미역을 독점적으로 채취하고 있었으나, 제 3기에 들어가서 일본인들과 공동으로 채취하게 되었다. 1910년에 출판된 『한국 수산지』는 이 경위를 이렇게 적었다.

김과 미역은 종래 섬사람이 주로 채취하였으나 지금은 일본인들도 똑같이 김과 미역 채취에 종사하고 있다. 다만 일본인들이 미역을 채취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로 섬사람과 공동으로 채취 작업을 하는 외에 단독으로 미역 채취에 종사하는 자는 없다. 대개 이 군의 일반 관행을 지키는 것이다……

어선은 섬사람 소유의 보통 범선 30척, 해조 채취에 사용하는 작은 배 200척, 일본인들 소유의 보통 어선 120척, 합계 350척이 있다.⁸⁴⁾

해조를 채취하는 한국인들의 작은 배가 1910년에는 200척에 달했다. 한국인들은 미역 채취 외에 일본인들에게 배워 1907년부터 오징어잡이를 시작했다고 하며 『한국 수산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83) 外務省記録 616-10, 『蔚陵島ノ現況ニ關スル報告書』 『釜山領事館報告二』, 明治 38(1905)년 12월.

84) 농상공부, 앞의 책, pp.715-716.

주민들은 원래 농업을 주로 하여 어업은 해조 채취에 머물렀으나 근래에는 일본인 거주자들에게 배워 중등 이하의 농민은 거의 오징어잡이를 하게 되었다. 군의 보고에 의하면 어업을 겸하는 자는 480호 2,095인(남 1,137인, 여 758인)을 헤아리며 섬 주민의 과반수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

오징어는 앞서 말했듯이 광무 7년(메이지 36년) 일본인들이 어획을 시작했는데 섬사람이 이것을 배워 오징어잡이를 시작한 것은 3년 전이다. 이것이 유리한 업이 되어 이제는 이에 종사하는 자가 아주 많아졌다. 어업 시기는 5월부터 11월에 이르는 7개월간이며 가장 왕성한 시기는 6월부터 9-10월에 이르는 기간이다.⁸⁵⁾

주민들의 과반수가 겸업으로 오징어잡이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 결과 1907(메이지40)년에는 말린 오징어 수출량이 전년의 3.5배로 증가하였다. 오징어잡이가 크게 발전했던 것이다.

8. 울릉도 주민들의 독도 인식 및 이용

울릉도에서 어민이 독도로 가기 시작한 것은 기록상으로는 1899년이다. 한편 기록에는 없지만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독도로 주민들이 그냥 간다든지 혹은 어민이 출어 중에 악천후를 만나 독도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독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해도 독도를 유효하게 활용했다고는 말하기가 어렵다. 독도를 유효하게 활용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독도로 향해했을 경우인데 이는 거의 어업 활동에 한정된다. 또한, 그런 어업을 통해 독도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형성됐던 것이다.

독도에서의 계속적인 어업은 앞장에 기술했듯이 1899년부터는 울릉도를 기지로 하는 전북 채취와 상어잡이가 시작되고, 1903년부터는 오키도를, 1904년부터는 울릉도를 기지로 하는 강치 잡이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어업이 독도 영유권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지를 살펴본다.

85) 위의 책, pp.710-715.